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 / 15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- 제품명: 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복합 수지 제품의 사출 성형 원재료
- 사용상의 제한 : 용도 외 사용 하지 마시오.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제조자 정보

제조회사명	한화토탈(주)		
주소	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독곶2로 103		
전화	041-660-6106	팩스	041-660-6089



2. 유해 · 위험성

가. 유해 · 위험성 분류 정보:

- 물리적 위험성
 - 분류되지 않음
- 건강 유해성
 - 발암성 : 구분 2
- 환경 유해성
 - 분류되지 않음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:


- 그림문자:



- 신호어: 위험

- 유해 · 위험 문구:

-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2 / 15

○ 예방조치문구:

- 예방: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
• P280 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- 대응:
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
- 저장:
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.

- 폐기:

- P501 폐기물관리법의 해당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:

- 자료없음

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
화 학 물 질 명	관용명 및 이명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폴리프로필렌 (POLYPROPYLENE)	1-프로펜, 호모중합물(1-PROPENE, HOMOPOLYMER);	9003-07-0/KE-29389	75 - 85
삼산화 안티몬	-	1309-64-4/KE-09846	1 - 10
난연제	-	영업비밀	10 - 20
첨가제 및 안료	-	영업비밀	1 - 5

※ 식별번호: KE(한국기존화학물질 등록 번호)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 갔을 때:

- 눈에 묻으면 몇 분간 충분한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-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시오.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3 / 15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:

- 즉시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20분 이상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오.
- 재사용 전에는 옷과 신발을 완전히 씻어내시오
-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십시오.
-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.
- 뜨거운 물질인 경우,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십시오.
-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십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:

-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.
-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.
-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세요.
-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-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.
-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.


라. 먹었을 때:

-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.
-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십시오.
-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십시오.
-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:

- 의료 공급자가 물질을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받도록 하시오.
-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노출 및 노출 우려 시 의학적인 조치, 조언을 구하십시오.

5. 폭발 -화재시 대처방법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4 / 15

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:


- 적절한 소화제: 안개, 미세한 물 분무, 건조화학적제, 건조모래, 이산화탄소, 내알콜포말, 일반포말
- 부적절한 소화제: 워터젯, 고압주수
- 대형 화재시: 물분무/안개, 일반포말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십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:

- 열분해 생성물:
 -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성 가스, 탄소 산화물을 발생함
 - 화재 시 자극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
 - 일부 액체는 현기증,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
- 화재 및 폭발위험:
 -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
 -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 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 -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

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:

-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하십시오.
-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대피하십시오.
-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.
-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
-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십시오.
-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.
-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.
-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.
-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미세분말의 물질은 발화할 수 있음.
- 화재수의 처리를 위해, 배수로를 만들어 물질의 확산을 막으시오.
- 이동 중 고온이 될 가능성이 있음
- 유출물은 오염을 야기할 수 있음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5 / 15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:


- 누출물을 만지거나 걸어서 다니지 마시오.
- 분진 형성을 방지하십시오.
-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.
- 오염지역을 환기하십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-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.
-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, 보호구 향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십시오.
- 분진 비산을 막기 위해 물로 축축이 적시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
- 전문가의 감독 없이 청소 및 처리를 하지 마시오.
-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(8항 참조)를 착용하여,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-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:

- 대기중 유출:
 - 누출된 물질은 잠재 위험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수거하십시오.
 -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실시하십시오.
- 토양 유출: 자료없음
- 수중 유출: 자료없음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킬 것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할 것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:

- 소량 누출:
 - 닦아 낼 것
 -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.
 - 해당지역을 환기시키고 누출지역을 씻어내시오.
 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십시오.
- 다량 누출:
 - 분말누출: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수성 천으로 덮어서 물과 접촉을 피하십시오.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고 저지대를 피하십시오.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6 / 15

내용을 통지하십시오.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십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십시오.
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:

- 취급/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/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십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십시오.
-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십시오.
-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십시오.
-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십시오.
-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십시오.
- 고온에 주의하십시오.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.
-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십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십시오.
-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-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하십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십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의, 작업화를 사용하십시오.
- 분진의 발생과 축적을 최소화하십시오.
-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십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방법:

-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십시오.
- 밀폐하여 보관하십시오.
-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-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십시오.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십시오.
- 발암성 물질 저장구역을 지정하여 저장하십시오.
-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.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7 / 15

-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.
- 화기엄금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:

화학명	국내규정 (산업안전보건법)	ACGIH 규정
삼산화 안티모니	TWA : 0.5 mg/m ³ 삼산화 안티몬(취급 및 사용물) TWA : 0.5 mg/m ³ 안티몬과 그 화합물	자료없음

○ 생물학적 노출기준: 해당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: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다. 개인 보호구:

○ 호흡기보호: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검정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.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 호흡보호구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.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.


※ 대피할 경우

- 분진, 미스트 및 흠용 호흡보호구
-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(고효율 미립자 여과재)
-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(분진, 미스트, 흠용 여과재)
- 고 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.

※ 미지농도 또는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
-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○ 눈보호: 비산물 및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. 작업장 가까운 곳에 긴급세안시설 및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을 설치할 것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8 / 15


- 손보호: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
- 신체보호: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합한 보호의를 착용할 것

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(물리적 상태, 색 등): 고체 (펠렛)
- 나. 냄새: 자료없음
- 다. 냄새 역치: 자료없음
- 라. pH: 자료없음
- 마. 녹는점: 자료없음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: 자료없음
- 사. 인화점: 자료없음
- 아. 증발 속도: 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): 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: 자료없음
- 카. 증기압: 자료없음
- 타. 용해도: 자료없음
- 파. 증기밀도: 자료없음
- 하. 비중: 0.90 ~ 1.00
- 거. n·옥탄올/물 분배계수: 자료없음
- 너. 자연발화온도: 자료없음
- 더. 분해 온도: 자료없음
- 러. 점도: 자료없음
- 머. 분자량: 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:
 -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
 -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 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 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 -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
 - 비인화성,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/독성 흡을 발생할 수 있음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9 / 15

- 부식성/독성: 증기, 분진, 물질의 흡입, 섭취, 접촉은 심각한 상해, 화상,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

다. 피해야 할 조건:

- 열, 화염, 스파크,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

라. 피해야 할 물질:

- 금속, 물

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:

- 부식성/독성 흡,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:

- (호흡기): 구분 외
- (경구): 구분 외
- (눈 · 피부): 구분 외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급성독성:

- 경구:

[폴리프로필렌(POLYPROPYLENE)] : (LD50) > 8000 mg/kg 흰쥐
[삼산화안티몬] fatal dose >7500 mg/kg 실험종 : Rat (OECD TG401, 유사물질 antimony oxide)(ECHA)

- 경피:

[삼산화안티몬] LD50 >8300 mg/kg 실험종 : Rabbit (OECD TG 402)(ECHA)

- 흡입:

[삼산화안티몬] LC50 >5.2 mg/l 4 hr 실험종 : Rat (ECHA)

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: 자료없음


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:

[삼산화안티몬] 토끼를 이용한 눈손상 자극성 시험결과, 자극성 없음.
(결막지수: 0.44)(OECD Guideline 405, GLP)

호흡기 과민성: 자료없음

피부 과민성:

[삼산화안티몬] 자극성 없음, Rabbit, 각막흔탁(0), 홍채(0), 결막총혈(0.4), 결막부종(0), OECD TG 405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0 / 15

○ 발암성:

- 산업안전보건법:
 - [삼산화안티몬] : 특별관리물질
- 고용노동부 고시:
 - 1B (삼산화 안티몬(생산))
 - 2 (삼산화 안티몬(취급 및 사용물))
- OSHA: 해당됨
- NTP: 자료없음
- IARC(GROUP):
 - [폴리프로필렌(POLYPROPYLENE)] : Group 3
 - [삼산화안티몬] : Group 2B
- ACGIH:
 - [삼산화안티몬] A2
- EU CLP:
 - [삼산화안티몬] Carc.2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:


[삼산화안티몬]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 시험결과,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.(OECD Guideline 476)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결과,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(OECD Guideline 471)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결과,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, (OECD Guideline 473)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결과, 음성. (OECD Guideline 474) 생체 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, 음성. (OECD Guideline 475, GLP) 생체 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합성(UDS)시험 결과, 음성. (OECD Guideline 486)(ECHA)

○ 생식독성:

[삼산화안티몬] 수컷의 정액의 질 또는 암컷의 발정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. 생식 조직에 대한 조직 병리학 적 평가가 없음. 50, 100 mg / kg i.p. 후에 높은 수준의 독성 (치명적)이 관찰됨., GLP antimony trioxide을 이용한 이 흡입 랫드 범위 확인 발달 독성 연구에서, NOEC(모체독성) = 6.07 mg/m³, 가장 높은 용량을 평가함, NOEC(발달독성) > 6.07 mg/m³, rat, OECD TG 414, GLP (ECHA)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(1회 노출):

[삼산화안티몬] 경구: (1) 독성 영향 없음 / (2) 현미병리학적 검사에서 기질과 관련된 어떠한 유기적 손상이 없음
 경피: 단일 적용 후 : 유의미한 국소 반응 또는 전신 독성의 명백한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. 흡입: 노출 단계 및 노출 후 기간 동안 임상적 징후가 없음 / 한 동물은 폐의 거시적 변화로 여러 적회색 병변(0.1-0.2 mm 직경)을 나타냈습니다.(랫드 / 수컷/암컷 / OECD TG 403 /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1 / 15

GLP)※출처 : ECHA
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(반복노출):
 - [삼산화안티몬] 경구(아만성): 2회 반복투여 경구연구에 따르면 diantimony trioxide는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음, NOAEL(간 독성)=1686 mg/kg/day 제안됨,
 - Rat 흡입(반복): 치명적인 영향이 구체화 되지 않음, miniature swine※출처 : ECHA
- 흡인 유해성: 자료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 · 육생 생태독성:

- 급성수생환경독성:
 - 어류:
 - [삼산화안티몬] LC50 14.4 mg/l 96 hr Pimephales promelas(지수식, 담수)
 - 갑각류:
 - [삼산화안티몬] LC50 1.77 mg/l 96 hr Chlorohydra viridissimus(지수식, 담수)
 - 조류:
 - [삼산화안티몬] EC50 > 36.6 mg/l 72 hr
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(OECD TG 201, ISO 8692 (Water Quality – Fresh Water Algal Growth Inhibition Test with Scenedesmus subspicatus and Selenastrum capricornutum), 지수식,담수) 출처 : ECHA
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:

- 잔류성:
 - [삼산화안티몬] -0.306 log Kow
- 분해성: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:

- 생물 농축성:
 - [삼산화안티몬] 16000 BCF (ECHA)
- 생물 분해성: 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: 자료없음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2 / 15

마. 오존층 유해성: 해당없음

바. 기타 유해 영향: 자료없음

마. 오존층 유해성: 해당없음

바. 기타 유해 영향:

[삼산화안티몬] 어류: Pimephales promelas, NOEC, 30d > 0.007 mg/L,
 유수식, 조류: 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, NOErC50, 72h, =
 약 100 mg/L, ErC50, 72h, = 약 206 mg/L 지수식, OECD Guideline
 201(EHCA)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: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, 소각 처리할 것,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음

나. 폐기시 주의사항:
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,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: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: 자료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: 자료없음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3 / 15

라. 용기등급: 자료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: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:

-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: 자료없음
-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: 자료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


- 작업환경측정물질 :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 (측정주기 : 6개월)
- 노출기준설정물질 :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
- 특별관리물질 :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
- 관리대상유해물질 :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
- 특수건강진단물질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 (진단주기 : 12개월)
- 제조등금지물질 : 해당없음
- 허가대상물질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-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: 해당없음
- 중점관리물질 : 해당없음

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 :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: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4 / 15

[삼산화 안티몬] : 해당됨

- 사고대비물질 : 해당없음
- 허가물질 : 해당없음
- 제한물질 : 해당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없음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없음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지정폐기물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
-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:
 - 확정분류 결과: 해당없음
- 미국 관리정보
 - OSHA 규정(29 CFR1910.119): 해당없음
 - CERCLA103 규정(40 CFR302.4): 해당없음
 - EPCRA 302 규정(40 CFR355.30): 해당없음
 - EPCRA 304 규정(40 CFR355.40): 해당없음
 - EPCRA 311/312 규정(40 CFR355.40): 해당없음
 - EPCRA 313 규정(40 CFR372.65):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: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: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: 해당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:

-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노동부고시 제2016-19호(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한화토탈주식회사에서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의하여 작성함.
- 본 자료는 제품 자체를 보증하는 기술 자료가 아님을 주지할 것.

나. 최초 작성일자 :

	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	제 정 일	2011-11-11
		개 정 일	2019-10-01
	한화토탈 복합수지 FH42P	개정번호	3.0
		Pages	15 / 15

2011-11-11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3.0

2019-10-01

라. 인용문헌:

Chemwatch AuthorITe(MSDS Authoring Software)

KOSHA

